

의안번호	2218312
의 퇴 인	김기표의원
회 답 일	2026.07.14.
추계번호	26C2067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 제4항· 제6항 신설 (보육교직원의 배치)	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육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(제4항). 1. 관계 법령, 정관 또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연가, 병가, 공가 및 특별휴가(결혼, 사망, 출산휴가, 모성보호 휴가 등을 포함한다)를 사용하는 경우 2. 연수, 보수교육, 보육 현장 지원을 위한 파견 또는 출장 등에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3. 「병역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4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5. 본인 및 가족의 질병·사고,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긴급지원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	의무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위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연계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(이하 “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운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(제6항)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 제4항· 제6항 신설 (보육교직원의 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현행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집 대체인력 배치 사유를 구체화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
 - 각 시·도는 현행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7조제4항¹⁾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 배치를 지원하고 있음
 - 보육교직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인력 배치 신청이 가능하며, 보수교육, 연가, 건강검진 등 사유에 따라 지원 일수가 상이함
 - 이에 교육부는 대체교사 인건비 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2026년 기준 국비 636억 2,000만원이 편성됨
 - 개정안은 보수교육, 파견·출장, 건강검진 등 개별적인 대체인력 배치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, 국가 등이 학교 현장과 연계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함
- 개정안 시행으로 대체인력 배치 확대 및 지원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기존 제도와의 중복 등으로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(안 제17조제4항) 개정안 시행 시 대체인력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행 법령하에서 이미 해당 사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, 개정안에 따른 신규 수요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사유는 현행 「영유아보육법」 하에서도 인정되나, 사유별 지원 한도가 존재하여 개정안 시행 시 사업 확대에 의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따라서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대체인력 인건비 등이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신규 대체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

1)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17조(보육교직원의 배치)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.

- (안 제17조제6항) 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이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간의 연계·통합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, 유치원은 교육시설에 해당하여 관리주체가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시·도교육청으로 상이함
 - 이에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은 시·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, 유치원의 경우 각 시·도교육청이 대체인력 채용, 신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역시 이원화되어 있음
 - 개정안 시행으로 각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아 이를 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* [참고자료] 대체교사 지원 사유 및 일수

구분	지원 사유	지원 일수
상시	보수교육(직무교육)	5일
	본인 결혼	1~5일
	연가	연간 1~15일
	예비군 훈련	훈련 기간
	건강검진	1일
	어린이집 자율관리 지원	회당 1일
	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	최대 10일
긴급	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	기간 제한없음
	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	1~10일
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일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일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
	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	1~10일(최대 10일)
	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	1일(최대 3일)
	유산(~15주)	5일(최대 10일)
	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	1일(최대 3일)
	배우자 출산휴가	최대 20일
	가족돌봄휴가	1일(최대 3일)
	보육교사의 퇴직	1~5일(최대 5일)

자료: 교육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